

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6. 10. 20 선고 2015가합146 판결 [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말소]

전 문

원고A발전협의회

피고B

변론 종결2016. 9. 8.

판결 선고2016. 10. 20.

주 문

1.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, 2항 기재 각 부동산(이하 '이 사건 ①, ② 부동산'이라 한다)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울진등기소 2015. 7. 29. 접수 제7801호로 마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의,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(이하 '이 사건 ③ 부동산'이라 한다)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울진등기소 2015. 7. 29. 접수 제7802호(소장에는 '제7801호'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)로 마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이 유

1. 기초 사실

가. 원고는 2011. 8. 16. 이 사건 ①, ② 부동산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, 2015. 5. 8. 이 사건 ③ 부동산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.

나. 이 사건 ①, ② 부동산에 관하여는 대구지방법원 울진등기소 2015. 7. 29. 접수 제7801호로 원고의 대표자가 C에서 피고로 변경되었음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가 마쳐졌고, 이 사건 ③ 부동산에 관하여는 대구지방법원 울진등기소 2015. 7. 29. 접수 제7802호로 원고의 대표자가 D에서 피고로 변경되었음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(위 각 표시변경등기를 통틀어 '이 사건 각 표시변경등기'라 한다)가 마쳐졌다.

[인정 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2, 3, 4, 11호증(가지번호 포함)의 각 기재

2.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

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펴본다.

가.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주장

이 사건 각 표시변경등기가 마쳐질 무렵 원고는 해산되어 존재하지 않는 단체였다. 따라서 피고는 당시 원고의 대표자로 선출될 수 없었고, 설령 피고를 원고의 대표자로 선출하는 결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결의는 실체적, 절차적 하자가 있어 무효이므로, 피고를 원고의 대표자로 볼 수 없다.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등기명의인인 원고의 대표자 명의를 피고로 변경하는 이 사건 각 표시변경등기를 마쳤으므로, 위 각 등기는 무효이다.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표시변경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.

나. 판단

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가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을 해치는 방법으로 행하여져 등기가 타인을 표상하는 결과에 이르렀다면 그 경우 원래의 등기명의인은 새로운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그 변경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을 것이나, 그 표시변경이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행하여진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그것이 잘못되었더라도 다시 소정의 서면을 갖추어 경정등기를 하면 되므로 소로써 그 표시변경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어 허용되지 아니한다(대법원 2000. 5. 12. 선고 99다69983 판결, 대법원 2012. 3. 15. 선고 2011다9136 판결 등 참조).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펴건대, 이 사건 각 표시변경등기는 원고의 대표자

명의를 변경된 것을 표상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고, 위 각 표시변경등기로 인하여 등기명의인인 원고의 동일성이 훼손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, 위 각 표시변경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다(다만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각 표시변경등기 과정에 잘못이 있다면 이는 경정등기의 방법으로 시정될 수 있을 뿐이다).

3. 결론

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.

재판장판사강경호

판사김동휘

판사정종륜

별지